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9차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녹색전환 추진 등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 〉
■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913호)

2026. 3.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녹색전환 추진 등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	3
※ 참고자료	8
1. 녹색경제·산업 관련 실태조사 현황	8
2. 학교의 범위 및 현황	9
3. 학교 환경교육 현황	10

I. 제안경위

2025년 8월 1일 이재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8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기존 산업에서 녹색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에 관한 사항,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항, 녹색산업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생활의 확대를 위해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학교교육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시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녹색기술의 기초적 역량 강화를 위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정부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 시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교육의 내용에 녹색기술의 기초적 역량 강화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생

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및 제67조제5항 후단 신설).

III. 검토의견

1. 녹색전환 추진 등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

개정안은 ① 녹색경제 및 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정부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54조제2항), ② 학교 교육의 내용에 녹색기술의 기초적 역량 강화를 위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5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4조(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생략)	제54조(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대한 실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6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 ④ (생략)	제6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정부는 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⑤ ----- ----- ----- -----

현행	개정안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⑥·⑦ (생략)	----- ----- ----- ----- ----- ----- 이 경우 학교교육에는 <u>녹색기술의 기초적 역량 강화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⑥·⑦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현행법에서는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기 위한 녹색성장, 녹색경제, 녹색기술, 녹색산업¹⁾에 대해 규정하면서, 제54조²⁾에서 녹색산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14.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15. “녹색경제”란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를 말한다.
16. “녹색기술”이란 기후변화대응 기술(「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말한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17. “녹색산업”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정부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건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경제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존 산업에서 녹색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에 관한 사항
3. 녹색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단계별 목표,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항

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 경제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녹색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에 관한 사항, 녹색산업 촉진을 위한 중장기·단계별 목표,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녹색경제·녹색산업 육성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책 추진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등 개별 법률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면서 관련 항목의 조사·전망을 실시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이러한 조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짐.

[관련 실태조사 추진 현황]

연번	조사 항목	조사명	근거법령	소관부처
1	국내외 경제여건 및 전망	경제전망 (연 2회)	국가재정법	재경부
2	녹색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	-	친환경산업법	산업부
3	국가기반시설을 친환경 시설로 전환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10개년)	지속가능교통법 신재생에너지법	국토부 산업부
4	녹색산업 촉진 중장기·단계별 목표 및 전략	환경기술 환경산업 환경인력기술 육성계획 (5개년)	환경기술산업법	기후부
5	녹색산업 육성·지원			
6	녹색경영을 위한 자문서비스 산업의 육성			
7	녹색산업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5. 전기·정보통신·교통 등 기존 국가기반시설을 친환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사항
6.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위한 자문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녹색산업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② 현행법 제67조제5항³⁾에서는 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학교교육,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에 더해 학교교육의 경우 녹색기술의 기초적 역량 강화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인적·기술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짐.

한편,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가 개별법에 따라 이미 진행하고 있는 점, 학교 현장에서 추가적인 행정적·재정적 후속 조치 없이도 적용이 가능한 점⁴⁾ 등을 고려할 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부칙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⑤ 정부는 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4)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초등학교·중학교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에서는 유치원~고교까지 기후대응교육을 실시하도록 既규정하고 있음.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22조의2(기후변화환경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536

참고 1

녹색경제 · 산업 관련 실태조사 현황

□ 녹색경제 · 산업 육성 · 지원 시책 (법 제54조)

- (배경) 녹색경제 구현을 통해 국가경제 건전성과 경쟁력 강화 및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육성 · 지원
- (개요) 녹색경제 구현 및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현황 및 여건, 정책 추진 현황에 관한 사항을 각 호로 명시하여 시책을 수립토록 함

< 탄소중립기본법 제54조 각 호의 사항 >

1. 국내외 경제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존 산업에서 녹색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에 관한 사항
3. 녹색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 · 단계별 목표,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지원하기 위한 사항
5. 전기 · 정보통신 · 교통 등 기존 국가기반시설을 친환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사항
6. 기업의 녹색경영을 위한 자문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녹색산업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녹색경제 · 녹색산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 관련 실태조사 추진 현황

- 정책 추진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각 개별법에서 종합계획, 실태조사 등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음

	조사 항목	조사명	근거법령	소관부처
1	국내외 경제여건 및 전망	경제전망 (연 2회)	국가재정법	기재부
2	녹색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	-	친환경산업법	산업부
3	국가기반시설을 친환경 시설로 전환	지속가능 국가교통 물류계획 (10개년)	지속가능교통법 신재생에너지법	국토부 산업부
4	녹색산업 촉진 중장기 · 단계별 목표 및 전략	환경기술 환경산업 환경인력 기술 육성계획 (5개년)	환경기술산업법	환경부
5	녹색산업 육성 · 지원			
6	녹색경영을 위한 자문서비스 산업의 육성			
7	녹색산업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참고 2

학교의 범위 및 현황

□ 학교의 범위

- 유아교육 · 초등교육 ·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한 학교를 말하며 학교의 종류 등은 법률로 따로 정함(교육기본법 제9조)
- 다만, 환경교육법은 한국과학기술원 등 4개 법인과 어린이집에서 이뤄지는 환경교육도 학교교육으로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환경교육법 제2조)

< 학교의 종류 및 학교 환경교육 >

- ◇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한 학교 : △ 유치원(유아교육법)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초·중등교육법)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등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고등교육법)
- ◇ 환경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환경교육의 지원 대상 : △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한 학교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 한국과학기술원법 등 4개 법률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 환경교육법 제10조의2에 의한 학교 환경교육 의무화 대상 : 초등학교, 중학교(2023.년~)

□ 학교 현황(교육통계포털, 24년말 기준)

- 유치원~고교까지 학교는 전국 2만개소, 이 중 초~고교는 1.2만개소이고 의무교육은 초·중학교 9천개소에서 실시(2024.12월 말)

구분	계(개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학교(개소)	20,480	8,294	6,183	3,272	2,380	351
학생(만명)	565	49.6	249.5	133	130	2.9
교원(만명)	51	5.5	19.7	11.5	13	1.1

참고 3

학교 환경교육 현황

① 각급 학교별 지도·감독기관

- 일반적으로 유치원~고교*는 교육청, 대학교는 교육부에서 지도·감독
* 국립학교는 교육부에서 지도·감독
- 유치원~고교는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과정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지역에 적합하게 정할 수 있고 학교에서 운영

구분	관련 사무
유치원, 초등학교~고등학교 등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지도·감독) 국립유치원,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유치원(학교), 특수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교육과정) △유치원,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함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음△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시행
대학교 등(고등교육법)	(지도·감독)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감독을 받는다. (교육과정)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4개 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법 등 4개 법)	(학위과정 등) △과학기술원에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과정을 두며 △과정별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학과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하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고) 환경교육에 대한 기후부의 역할 (환경교육법)	(학교 등의 환경교육 지원)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유치원,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학교환경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환경체험·보전활동의 활성화 등을 지원

② 초·중등학교 환경교육

- (교과 연계) 국어, 사회, 도덕, 과학 등 교과 내 환경과 관련된 영역에서 환경교육 실시
- (창의적 체험활동) 환경시설 방문 등 자율 활동, 환경동아리 활동, 환경관련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등을 통해 환경교육 실시

□ 교육청별 주요 환경교육 운영 현황

구분	환경교육 운영 현황(2023.3.1.~)
서울교육청	교육과정 연계 생태전환교육 강화(교과연계, 범교과 학습, 창의적 체험활동 등 7시간 이상 편성 권장, 기후변화환경교육 주간 계기교육 및 기후행동 실천)
부산교육청	생태환경교육지원사업비 지원,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필수)(학교환경교육 실시계획 수립, 실천프로그램 계획 포함, 1교1생태환경 관련 동아리 운영), 교육과정 연계 환경교육 실시(필수)
대구교육청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 환경 수업 실시 및 내실화(8차시), 1교 1특색 환경교육 과제 운영, 환경교육(ESD) 학생 동아리 조직운영, 생태전환교육 실천학교·탄소중립 시범·중점학교 운영, 기후변화 환경교육 교재 발간 등
인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기반 조성(생태전환교실 시스템 구축운영, 하천과 숲을 살리는 숲속학교 조성), 생태전환교육 활성화(에코스마트팜 체험교육, 기후생태환경교육 실천학교 운영 등), 생태시민 프로그램 운영, 환경교육 의무화 시수 운영
광주교육청	교육과정 연계 기후환경생태교육 2시간 필수, 2시간 추가 권장, 환경교육주간 운영, 기후환경생태영역 자치학교 운영, 기후환경교육 교사연구회·교원 연수 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기후환경생태교육 운영, 학교텃밭 가꾸기 사업 등
대전교육청	생태전환교육 교육과정 강화(범교과 연계 연간 6시간 이상), 1교1특색 환경실천과제 운영, 환경학생 동아리 운영, 학교 안 생태전환교육 체험장 초록꿈마당 운영, 환경교육 탄소중립 중심학교 운영 등
울산교육청	환경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의무화(창의적체험활동 또는 교과연계 4시간 이상), 생태환경교육 실천 학생동아리 활동 교사환경수업 개발 동아리·생태환경연구학교 등 운영, 지역협력 학교환경교육 지원 강화 등
세종교육청	환경수업 운영 2시간 이상 권고, 학교별 교과와 창체활동 등 범교과 연계로 자율 운영, 학교환경교육담당자 지정, 탄소중립 시범학교·찾아가는 학교환경교육 찾아가는 분리배출교실 학생환경동아리 등 운영
경기교육청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지구지킴이 일일 프로젝트' 실시 (연간 2시간), 탄소중립 중점·시범학교·생태숲학교 운영, 환경교육 교원 직무연수 운영,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계 환경보전 프로젝트 운영 등
강원교육청	생태적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교육, 생명 다양성 교육 등을 학교 교육과정 필수 반영, 1교 1특색 생태환경교육 운영, 탄소중립 중점·시범학교·강원 생태환경실천학교 운영 등
충북교육청	학교별 환경교육 추진계획 학교교육과정에 반영,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교육' 시수를 학교별 연간 2시간 이상 필수 편성 운영(교과와 창체 활용), 학교기본운영경비(환경교육) 지원 등
충남교육청	충청남도 참학력 초·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연간 4회 이상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지도계획 수립 및 실시), 학교별 환경교육 추진계획 학교교육과정에 반영, 환경사랑 학생동아리 조직 및 운영 의무화 등
전북교육청	범교과주제로 관련 교과 통합(교육과정 재구성), 창의적체험활동, 학교자율시간(환경교과목편성_자율) 등에서 환경교육 의무 실시, 모든 학교에 기후변화교육 경상운영비 지원 등
전남교육청	학교별 기후변화 환경교육 운영 계획 수립(필수), 범교과주제로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교과와 통합·운영(의무), 교육과정 연계 기후변화 환경교육 운영(학년별 연 1회 운영 필수), 탄소중립 선도 학교·실천집중주간 운영 등
경북교육청	범교과학습(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실시(2시간),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생태전환교육 실시, 환경교육주간 운영, 학교기본운영비 추가지원사업비 지원을 통한 학교 맞춤형 생태전환교육 운영 등
경남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변경(중점교육활동 '생태전환교육' 편성 의무), 학생 환경동아리 운영,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환경프로젝트 수업 권장(학기당 1회), 학생 환경프로젝트 발표대회 운영 등
제주교육청	교육과정 내(교과 및 창체 연계) 생태환경교육 편성·운영(연간 2시간 이상 필수), 학교 연간 교육 계획에 환경교육주간 반영, 생태환경교육 온라인 플랫폼 활용 자료 공유 및 나눔, 체험·실천 중심의 학교 환경교육 지원 활성화 등